

위 임 장

수임인 : 법무법인 한 누리 (www.hnrlaw.co.kr)

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, 431호(서초동, G-Five Central Plaza)
(Tel : 02-537-9500, Fax : 02-564-9889, hnrlaw@hnrlaw.co.kr)

위임인 인적사항

성명		생년월일		보유 주식수 및 보유기간	
주 소					
핸드폰 번호			이메일 주소		

위임인은 아시아나항공(주)의 박삼구 회장을 비롯한 이사들의 임무해태 및 회사기회 유용과 관련하여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주주대표소송 및 이에 부수하는 소송상·소송외적인 행위에 관하여 상기 수임인에게 위 각 법적 조치의 대리를 위임하고, 아래와 같은 권한을 수여합니다.

1. 일체의 소송행위, 보전처분의 제기, 반소의 제기 및 응소,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, 소의 취하, 청구의 포기 및 인낙, 복대리인의 선임, 목적물의 수령,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, 상소의 제기 및 수행, 강제집행, 소송비용의 청구 등 일체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행위
2. 위 민사절차에 부수한 행정청에의 신고, 기타 형사 및 행정상의 대리행위
3. 기타 상기 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필요한 행위(각 심급별 법원용 위임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목도장을 새겨 위임장에 날인하는 행위 및 아시아나항공(주)에 대하여 소송비용 청구를 위한 위임장에 날인하는 행위 포함)

2018. 7. .

위임인

(인)

*** 도장날인 후 신분증 사본 및 거래내역서 첨부**

사 건 위 임 계 약 서

의뢰인(‘갑’) :

수임인(‘을’) : **법무법인 한누리**

위 당사자들은 아래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 적)

‘갑’은 아래 사건의 처리(이하 “위임사무”라 한다)를 ‘을’에게 위임하고 ‘을’은 이를 수임한다.

아시아나항공(주) 이사들의 임무해태 또는 회사기회유용행위를 이유로 이들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주주대표소송의 수행 및 이에 부수하는 소송상·소송외적 행위

제 2 조 (위임사무의 범위)

‘갑’이 ‘을’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는 아시아나항공(주) 이사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및 재판외의 행위로 하며, 1심부터 3심까지를 포괄하여 위임한다.

제 3 조 (수권범위)

‘갑’은 ‘을’에게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에 적은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.

제 4 조 (수임인의 지위)

‘을’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한다.

제 5 조 (자료제공 등)

‘을’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(예컨대, 주식취득 및 보유관련 자료)에 대하여 ‘갑’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착수금)

위임사무의 수행에 따른 착수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.

제 7 조 (성공보수)

- (1) 주주대표소송의 피고들로부터 아시아나항공(주)에게로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, 중재, 조정, 판결, 집행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 배상금의 지급이 명하여지는 것을 성공으로 본다.
- (2) 위임사무가 성공(일부 성공의 경우를 포함한다)한 때에는 성공보수금으로 **다음과 같은 비율에 따른 금원(부가가치세 별도)**을 ‘을’에게 지급하기로 한다. (다만, 성공보수의 지급은 ‘갑’의 부담으로 하지 아니하고, 아래 제8조와 같이 ‘을’이 사건본인 회사인 아시아나항공(주)로부터 수령하기로 한다.)

- 가. 본안 소송 제기 후 1심 판결선고 전에 합의나 화해로 종결되는 경우 : 승소 금액의 8%
- 나. 1심에서 승소한 후 종결된 경우 : 승소금액의 10%
- 다. 2심에서 승소한 후 종결된 경우 : 승소금액의 13%
- 라. 3심에서 승소한 후 종결된 경우 : 승소금액의 15%

제 8 조 (성공보수의 지급방식)

성공보수는 상법에 의하여 ‘을’ 이 사건본인 회사인 아시아나항공(주)로부터 직접 지급을 청구하여 충당하는 것으로 하며, ‘갑’ 의 계산으로 부담되지 아니하도록 한다. 다만, ‘갑’ 은 ‘을’ 이 사건본인 회사에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소송위임장 작성권한을 수여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.

제 9 조(비용부담)

- (1) ‘을’ 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, 송달료, 감정료, 예납금, 보증금, 등사료, 여비, 기타 필요한 실비도 ‘을’ 이 부담하며 피고들로부터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할 경우 이는 ‘을’ 에게 귀속된다.
- (2) 패소시 ‘갑’ 에게 소송비용부담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를 ‘을’ 이 부담해 주기로 한다.

제 10 조(중요사항의 결정)

‘을’ 은 합의안, 화해안, 조정안의 수락여부, 이미 제기된 소송의 취하, 화해, 합의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‘갑’ 과 동종의 처지에 속한 피해자들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, 피해자들의 집합적인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을 경우 ‘갑’ 은 이러한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.

제 11 조 (통지의무 및 자료보관)

- (1) ‘을’ 은 ‘갑’ 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‘갑’ 에게 통지하고,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‘갑’ 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- (2) ‘을’ 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‘갑’ 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위임이 종료한 때로부터 1년간 보관하며, 그 이후에는 ‘을’ 이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.

제12조 (비밀유지)

‘을’ 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,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‘갑’ 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 13 조 (정보제공동의)

‘갑’ 은 ‘을’ 에게 제1조 (목적)와 제2조 (위임사무의 범위)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근거법령(개인정보 보호법 등)이 정하는 민감정보,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.

제 14 조 (분쟁조정)

이 위임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.

2018년 7월 일

의뢰인('갑') (인)

수임인('을') 법무법인 한 누리
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
431호(서초동, G-Five Central Plaza)

개인정보 제공 동의

[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]

1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

- 법원 제출 서류의 필수기재사항 및 사건진행경과(결과)보고, 승소금 수령 필요사항
- 청구서 발송,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(현금영수증) 발행 필요사항

2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
이름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, 계좌번호, 기타 소송에 필요한 항목
(법인의 경우, 법인담당자의 이름, 전화번호, 이메일주소 등 기타 소송진행에 필요한 항목)
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
법률서비스 제공 요청일로부터 업무 완료시점까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며, 각종 세무 관련 신고자료 또는 세무 관련 기관의 요청자료 등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 종결 후 5년 동안 수집된 개인 정보를 보존합니다.

4. 개인정보 수집 동의거부 사항

- 의뢰인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- 동의를 거부할 경우 법원제출 서류 등의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발행 등의 세무사항 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.

동의하지 않습니다.

[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]

1.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목적

- 회사는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각종 소송수행 필요사항

2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
이름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, 계좌번호, 기타 소송에 필요한 항목

3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

대한민국 법원, 검찰청 등 관련 유관기관

4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
법률서비스 제공 요청일로부터 업무 완료시점까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며, 각종 세무 관련 신고자료 또는 세무 관련 기관의 요청자료 등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 종결 후 5년 동안 수집된 개인 정보를 보존합니다.

5. 개인정보 수집 동의거부 사항

- 의뢰인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- 동의를 거부할 경우 법원제출 서류 등의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발행 등의 세무사항 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.

동의하지 않습니다.

[만 19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]

본 동의서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본인의 위 [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] 및 [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]에 대한 확인서로 이용됩니다.

신청인	성명		생년월일		성별	
법정대리인	성명		관계		생년월일	성별
	휴대폰		이메일주소			
	주소					

20 년 월 일

현금영수증발행 번호(휴대폰번호)

동의인(법정대리인) 성명

(인,서명)